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·핀테크전략국		변남주 선임조사역	연락처	02-3145-7424
요청대상 행위	□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허용 범위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에 따른 중요단말기도 포함되는지 여부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 □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□ 금융회사는 용도, 테이터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단말기를 지정하고 중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외부 반출, 인터넷 접속,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하여야 하며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2조제1항제3호) 중요단말기는 망분리 적용을 예외 처리할 수 없습니다. 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취」제2조의2제1항) □ 최근 코로나19 펜테믹이 선언되고,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바,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. ○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한시적으로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(2020.2.7.) ○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업무에 따라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,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중요단말기에 대해서도 원격 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. ○ 다만, 중요단말기의 경우 정보유출 위험에 더욱 유의하시고 강화된 보인 정책"을 적용운영하시기 바랍니다. ㆍ 재택근무 직원 및 단말기 사전승인, 재택근무 단말기는 회사 단말기와 동일한 보안통제 적용원격접속시 통신 암호화 및 이중인증 적용, 원격접속 및 자료 반출입 이상징후 모니터링 강화 등 ○ 또한, 기 수립된 비상대책"절차 및 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" 및 그 외 관계 법규을 모두 준수하시고 비상상황 종료시 원격접속을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*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·준수해야 할("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23조) **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					

- **<u>|</u> 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